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합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대상 확대〉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7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의 적용 대상을 넓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u>2015년</u>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 ----- ----- ----- <u>2027년</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시·군·구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현행법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라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특례>

관련 조문	특례 내용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 통합에 따라 종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의 상실 또는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정원 외로 인정 - 폐지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 국가가 통합에 직접사용된 비용 지원 가능 - 통합으로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 지원 가능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우선 지정 - 각종 시책사업 등 시행 시 우선지원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된 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증가성이 반영되도록 정함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 운임·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름

이 중, 현행법 제53조는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부칙(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3조는 해당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규정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있으며, 창원시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시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년 간 지원받게 됨²⁾.

<창원시 및 청주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상남도 창원시	7,332	7,332	6,110	4,888	2,444	1,222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충청북도 청주시	9,353	9,353	7,794	6,235	3,118	1,559

※자료: 행정안전부

2) 창원시는 2011년부터 2020까지, 청주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현행법 개정으로 추가지원이 5년씩 연장되었음.

다만, 연장된 5년 동안 1년 차에는 설치되기 직전연도의 보통교부세액의 6%, 2년 차에는 5%, 3년 차는 4%, 4년 차에는 2%, 5년 차에는 1%를 추가지원함.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등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

	추진 현황
전라북도 전주·완주	- ('97, '07) 통합 추진했으나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 - ('13) 주민투표 실시 했으나 부결* *찬성 44.6%, 반대 55.3% - ('24. 6.) 시민단체 주도 전주·완주 통합서명운동 - ('24. 7.)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통합건의서 정부제출
전라남도 목포·신안 등	- ('94~'12) 6차례 통합 논의 있었으나 통합실패 - ('23) 목포신안통합추진위 출범 - ('24. 7.) 목포시장·신안군수 통합 입장문 발표 ※ 목포·신안·무안·영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경상남도 진주·사천	- ('10) 진주·사천 통합 논의 있었으나 통합실패 - ('24. 5.) 진주시장 진주·사천 통합 제안* *사천시장은 통합제안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 ('24. 6.)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자료: 통합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경과를 고려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추가지원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군·구 통합 등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구 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